



제10회

학봉상 시상식

논문공모부문
장려상 수상작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국민:
인권과 환대 너머 이방인의
문제 혹은 이방인으로부터의 문제

하태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 박사수료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국민

: 인권과 환대 너머 이방인의 문제 혹은 이방인으로부터의 문제

하태현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난민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곧 ‘국민은 누구인가?’ 를 보여주는 물음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난민 문제에 관한 인도주의적 목소리는 국민국가 안에서 법적 정의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난민인정과정에서 난민이 경험하는 폭력은 법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얽힌 여러 실천들과 관계 맺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난민과 관련한 법적 판결 속에 드러난 난민법과 행위자들의 폭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실천의 체계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난민 판례들은 난민의 증언불가능성과 수행성의 문제, 신문구조에서의 언어 문제, 그리고 난민/국민의 안전에서 드러나는 포용적 인종주의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실천의 체계로서 난민법과 난민의 문제는 난민인정심사가 출입국관리소에서부터 조사관, 통역관, 법관, 그리고 사회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난민 판례에서 난민은 질문 받는 자의 위치에 놓이지만, 동시에 난민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실천들 속에서 한국 사회에 물음을 던지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이란 국민과 난민 사이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다. 나아가,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이란 국민국가 안에서 보편적인 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시민이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여집합으로서 등장한 국민 상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어 : 난민, 국민, 인종주의, 권리를 가질 권리, 환대의 아포리아

I. 들어가며: 난민문제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넘어

여기 난민에 대한 두 가지 온정적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난민을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난민이 ‘삶의 장소를 잃어버린 자들’ (최병두, 2023: 115)이자 돌아갈 고향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주장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 가지의 입장은 서로 다른 논리적 난처함을 마주하고 있다. 이 난처함은 왜 현재 한국에서 두 가지 입장이 현실화되기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먼저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김성수, 2011; 차규근, 2011; 박인현, 2016)는 보편적 인권과 예외적인 난민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알다시피 난민은 개인의 불운한 이야기를 안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 이국으로 도착하며, 그의 이야기는 결코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해진 법 아래 놓여야 한다. 그래서 난민 인권 보장의 목소리는 적절한 법을 제정할 것과 법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난민신청자를 위태로운 위치로 옮겨놓는다. 난민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법관은 누가 난민이 아닌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보편적 인권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는 더욱 더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난민을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한다는 두 번째 목소리는 더욱 난처한 맥락 아래 놓여있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난민신청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곧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박순용·서정기·박진숙, 2020: 207). 그러나 이 주장은 조건 없는 환대가 국민과 이방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공된다면, 과연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 없는 환대는 과연 모두의 안정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위의 물음들은 우리가 난민 문제를 개념화할 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학술연구에서도 난민 인권과 환대의 목소리는 인도주의적 관점 아래 다뤄져왔다. 전반적인 연구동향은 제도적 차원과 법리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는데, 제도적 차원에서의 난민 연구들은 난민제도의 신설 및 개선, 난민법과 판례분석 등을 통해 난민에 관한 법적 부정의를 개선하고자 했다(김종철, 2014; 손영화, 2019; 김용철, 2020). 특히 손영화(2019)나 김용철(2020)의 연구는 난민협약이나 인권조약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난민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국민국가 차원에서 해소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한편, 이와 같이 난민 문제를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주목하는 연구들은 난민문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한국에서 왜 난민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난민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제는 단연 난민법과 판례분석이다. 판례분석의 경우, 한국의 난민법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

표를 공유하고 있었다(박인현, 2016; 정금심, 2018; 김종세, 2019; 이은채, 2019; 이일, 2019; 이진우 2022). 눈 여겨 볼 점은 난민법과 판례분석 연구의 주된 주장은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인식론적 기반 아래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난민법과 판례연구들은 당장 난민심사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층위에서 처방전을 제공하며, 향후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편,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규범 아래서 진행되는 법적인 논의는 난민 문제를 법 내부의 문제로 귀속시키거나, 윤리의 문제로 쉬이 소급시키면서 한국 사회에서 난민문제를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을 가로막는다. 즉, 난민법과 판례분석 연구가 제도적인 개혁과 법적인 정의를 도모했다는 것과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사유는 지금껏 유사한 틀거리 안에서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난민법과 판례 연구 중에서도 정금심(2018)과 이진우(2022)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데, 두 연구는 제각각 법 내부적 논리의 문제보다도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조건들(난민심사인력의 문제, 심사관 역량에 따른 난민심사, 가짜난민 담론 등)의 개선과 함께 법적 부정의를 시정하고자 했다. 특히 정금심은 난민심사관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외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를 통해 난민 안전이 법적인 논리 안에서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을 거치며 구성되는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법적 부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연구들 역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롯한다는 점은 난민 판례연구가 지닌 인식론적 맹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난민 문제를 문제화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국가에 대한 낡은 시선이다. 법무부와 그 산하의 기관들이 ‘국민의 이해관계를 비국민보다 우선’ 하는 마음으로 난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난민의 수용과 배제 문제를 국민국가 층위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때때로 답을 제공하는 듯하지만, 손쉽게 난민 문제를 국가폭력의 문제로 치환시키기도 한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지목이 되고 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책임은 국가로 귀속된다. 그리고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의 문제로 관심을 돌린다. 이를테면, 난민법이 충분히 인도주의적이지 않고, 법적 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부적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여 부정의함이 도처에 있기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거에 따르면, 법의 빈틈을 메우는 것은 국가폭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물론, 조금 다른 결에서 신지원(2015)은 법리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책적 결정으로서 난민보호를 살핀다. 이러한 논의는 법이 아닌 행정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가시화한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와 행정기관의 역할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유사한 궤적에 놓인다.

문제는 난민 신청자가 겪게 되는 폭력이 국민국가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출입국관리소의 행정 직원과 난민심사 공무원, 통역관, 그리고 법관에 이르

기까지 구체적인 행위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폭력으로의 규정은 다양한 행위자의 실천과 관행의 층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린다.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난민에게 가해지는 폭력만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봉착한 문제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답안을 작성하는 것과 다름없다.

출입국관리소와 난민인정심사 과정은 그 자체로 내부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통해 이주민의 지위를 선별해왔다. 다만, 이 선별 과정이 닫힌 시스템 안에서 ‘언제나 항상 정해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난민이 된다는 것—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공명정대한 법적 판결과 같이 단일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개인사’와 중층적 요인들의 우연적인 결합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의 행정적 처리가 미숙하거나, 난민 법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이다. 여기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난민인정심사 과정과 판결에 깃든 여러 행위자들의 실천과 그 체계다.

이에 이 연구는 난민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넘어 난민 문제를 이론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 판례 속에서 어딘가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 (displaced person)이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폭력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국민/난민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를 새로이 사유하자는 의미에서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물음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난민에 관한 이론적 접근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국가에서 배제된 이들은 그 권리들을 얻지 못했다. 아렌트가 보기에 인권이란 정치 공동체의 일원일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고, 법적인 보호나 정치적 권한이란 시민권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정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이들은 누구인가? 아렌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수 민족’과 ‘국가 없는 사람들’을 지목했다. 그리곤 어느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 즉, 더 이상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자에게 과연 인권은 무슨 소용이었는지를 묻는다. 그 질문은 곧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해석으로 이어진다. 인권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하는 권리’라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세계대전 이후 국민국가 밖에 놓인 사람들은 구체적인 보호를 제공받지 못했다. 관념상의 인권은 현실의 인간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아렌트는 인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렌트는 인권에 앞선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¹⁶⁾를 제시한다(Arendt, 2006: 533).

아렌트는 이 땅의 ‘권리 없는 사람들’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권리들은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공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정치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사람들(난민과 무국적자들)이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법 앞에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 밖으로 내몰려졌다. 그들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잃은 것이다(Arendt, 2006: 527-531). 이상의 논의는 권리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이론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¹⁷⁾

그렇다면 이 논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¹⁸⁾ 미등록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금되지 않도록 하거나, 접견의 자유를 보장받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권리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황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요청은 도덕적 차원에서 정부에게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이다(Maxwell, 2018). 즉,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룩하는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는 변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맥스웰은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주장하며, 이민법에 대한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나 법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규범적인 층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난민법 개정이나 제도적 개선 등의 방식으로 권리 없는 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 아렌트에게 있어서 ‘권리들 가질 권리’는 시민의 권리 확보에 관한 구체화된 주장은 아니었다.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구절이 학술적으로 널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다(Degooyer et al., 2018). 세일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는 아렌트의 ‘권리들을 위한 권리’를 확장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준 정치학자 중 하나다. 그는 아렌트가 ‘권리들’(rights)과 ‘권리’(right)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아렌트의 글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며 규범적인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분석을 쌓아야 한다고 권리를 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다만, 벤하비브는 세계인권선언(1948년)에서부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것을 두고 국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법들이라며 다소 규범적 차원에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아렌트가 국제연맹이나 국제기구에 대해 회의적으로 봤던 것과는 대치된다는 점에서 그 해석의 한계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Degooyer et al., 2018).

17)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테파니 데구이어(Stephanie Degooyer)는 국가 없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 국민국가 법으로부터 보호나 제지를 받거나, 유명한 난민이 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틈새 해법만을 열어둔다.

18) 최근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 차원에서도 이해되고 있다. 수행적인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발화 자체가 만들어내는 효과에 주목하게 한다. 권리에 대한 주장함으로써 권리를 형성한다는 것이 수행적인 이해의 주된 요지다. 즉, 아렌트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발화하여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Degooyer, 2018). 다만, 이러한 해석은 특정한 청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개개인에 앞선 공동체가 있어야 수행적 발화를 들을 수 있으며, 비로소 권리들을 가질 수 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발화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에 이 발화는 공동체라는 공간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데구이어는 수행적 발화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짚는다. 즉, 수행적 발화는 “공동체에 소속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Degooyer, 2018: 46)는 순환논리를 타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권리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라는 항은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권리 없는 사람에 난민을 대입했을 때도 유사하다. 명확한 주권이 명시되어 있는 공동체인 국민국가에서는 자국의 국민 보호를 우선시하며, 이때 난민에 대한 비호는 부차적인 것으로 내쳐진다. 이는 제국주의의 침탈이나 세계대전이 가졌던 파괴적인 위험성만큼이나 전지구적 상황 속에서의 국경이 명확히 구획된 국민국가 시스템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국민국가의 무능에서 찾았다. 그는 국민국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민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난민이 된 것이라며 국민국가 시스템을 비판한다. 덧붙여 아렌트는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 (Arendt, 2006: 540)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난민의 인권 그 자체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아니다. 아렌트는 권리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명시하며, 난민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아렌트가 제시한 공동체는 국민국가라는 낡은 형식이 아니다. 아렌트는 개개인의 성원권이 공동체 밖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동시에 국민국가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이는 난민 문제를 국가의 충위가 아닌 또 다른 충위에서 사고할 수 있는 토대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난민이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게 되면, 그는 언제, 어떻게 공동체의 손님이 아닌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에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권리의 관점에서 손님은 아무리 극진한 대접을 받더라도 그가 이방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데리다는 권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환대의 조건과 맥락들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이방인 문제가 누군가를 우리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방인 문제란 하나의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방인이 제기한 질문이자 이방인에게서 온 질문이며, 그렇기에 이방인은 ‘물음으로-된-존재’다(Derrida, 2004: 57). 이방인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혹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증하라”는 요청 앞에 놓인 자이자, 사람들로부터 요구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질문하는 자’에 선행하지 않는다.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질문자가 있기에 질문에 대답하는 이방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방인은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는 자이자, 우리 사회에 물음을 던져주는 존재라는 사고 또한 가능하다.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은 곧 ‘우리’의 관점에서 그의 세계에 대한 물음이며, 그의 대답은 그의 세계에 대한 대답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우회로를 열어준다.

특히 외국인인 법의 언어 앞에서 이방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방인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집주인, 주인, 국민, 국가, 권력에게 환대를 청해야 한다

(Derrida, 2004: 64-65). 데리다는 환대의 문제가 바로 이 폭력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이방인 환대 문제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요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환대의 문제가 결국 물음에 대한 문제” (Derrida, 2004: 73)라고 덧붙인다. 문제는 이 근원적인 폭력성을 제거한다는 것이 곧 이방인 환대 문제의 해법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사유의 연장에서 데리다는 ‘질문하는 것’과 ‘질문하지 않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환대가 될 수 있는지 물음을 던진다. 환대는 “이중의 소거, 즉 물음 및 이름의 소거로 이루어진 물음 없는 환영[맞아들임]에서 시작될까? 무엇이 더 정당하고 더 애정 어린 것일까? 묻는 것일까, 아니면 묻지 않는 것일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름 없이 부르는 것일까? 이름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이름을 배우는 것일까? 우리가 환대를 제공하는 자는 한 명의 주체, 식별 가능한 한 명의 주체일까? 자신의 이름으로 식별 가능한 한 명의 주체, 법권리의 주체일까? 아니면 차라리 환대는 타자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일까?” (Derrida, 2023: 47).

다만, 이상의 물음들이 곧 데리다의 환대가 무조건적인 환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아포리아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이들을 환대해 공동체로 너나 구별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시에, 오히려 동료 이웃을 의심하거나 불안에 빠질 수 있고, 그 결과 경찰력의 강화라는 악조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무조건적 환대는 유한한 우리가 이방인을 환대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완전한 국경의 개방은 더 제한적인 환대를 가져올 수 있다(진태원, 2023). 이에 반해서 조건적 환대는 이방인을 선별하는 과정이 폭력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한 과정이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넓은 환대의 가능성을 열어젖힐 수도 있다. 물론 이방인을 선별해 환대하는 조건적 환대가 무조건적 환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방인을 환대해야 한다는 지향성은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환대는 법이나 권리라는 형태로 제공될 수밖에 없으며, 현실사회에서 환대란 조건적인 형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환대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선 환대의 아포리아적인 성격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보경, 2023). 진태원(2023)이 말했듯, 무조건적 환대 입장에서 조건적 환대는 치안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조건적 환대 없이 무조건적 환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환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조건적 환대는 결국 행정적인 대처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환대가 처한 아포리아인데,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라는 개념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가 규범적 정의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리를 가질 권리가 국민국가 밖 난민이 처한 권리의 문제를 다룬다면, 데리다는 국민국가 안에서 작동하는 환대의 시스템을 탈구축하고 있다. 난민의 권리 주장은 일국의 법적인 체계를 제하고 논의할 수 없으며, 환대의 범위 역시 행정적 차원에

서 국민국가라는 항을 제하고 논의할 수 없다.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환대에 기반하여 구성되고, 환대는 법이나 권리라는 형태와 불가분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난민 문제는 아포리아에 직면해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아이러니한 구조에 놓여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규범적 차원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주장이나, 행정적 차원에서 포용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차원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난민에게 법의 문은 어떻게 견고한 벽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이른바 ‘가짜 난민’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어떻게 난민을 국민으로부터 배제시켰는가에 대한 물음은 난민 문제가 마주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지도 모른다.

푸코는 자신의 분석대상이 제도, 이론, 또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천들’ 이었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91). 푸코는 실천이 “말하고 행하는 것, 전체가 되는 규칙과 이성들, 그리고 명확한 사실과 계획 등이 만나 뒤엉키는 장소”(Foucault, 2014: 116)라고 말하며, 그 나름대로의 규칙과 논리, 전략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심 아래 푸코는 자신의 연구를 실천의 체계(regime of practice)에 대한 연구였다고 소개한다. 이때 ‘실천들’에 대한 분석이란 그것들이 수용되는 맥락과 조건들을 따지며 그 체계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푸코의 관심은 지식의 체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식의 체계(합리성의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더 가까웠다. 이는 실천의 체계가 어떤 합리성 아래에서 구분선 혹은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다. 요컨대, 푸코의 교도소 연구는 “제도로서의 감옥의 역사가 아니라 ‘감금이라는 실천’의 역사”(Foucault, 2014: 116)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푸코의 실천의 체계(regime of practice) 분석은 난민 연구에도 큰 함의점을 전달한다. 실천의 체계로서 난민인정과정은 하나의 실천으로서, 특수한 지식과 권력의 연합체 안에서 구성된 산물로 볼 수 있다. 난민인정과정을 실천의 체계로 들여다보는 작업이란 곧 “객관성들의 객관화의 역사”(Foucault, 1995: 123)를 분석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천의 체계로서 난민인정과정을 분석한다면, 난민인정과정에서 어떠한 조건과 쟁점이 ‘자연스럽고, 자명하며, 필수 불가결한 부분처럼’ 보이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 기존의 규범적 판단들이 어떤 규칙성과 논리, 및 전략 아래에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이주인권 관련 판결 중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선정한 사례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이주인권 현안을 논의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원 등 법조계와 이주민센터 ‘친구’ 등의 이주인권운동단체와도 협업하고 있는 모임이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기준은 1) 판결의 영향력, 2) 이주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3) 이주인권에 대한 이해, 4) 발전성, 5) 구체적 타당성 등 5가지 기준으로 이주인권에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을 선정하고 있다. 판결의 키워드는 다음의 15개의 키워드—외국인, 난민, 귀화허가, 외국국적자,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비전문취업, 통역, 외국인보호소, 무사증, 송환대기실, 입국불허, 임금-퇴직금-산재, 그리고 위명여권—를 통해 1차적으로 추려졌으며, 이 중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된 주제는 다름 아닌 ‘난민인정신청’ 과 ‘난민불인정’ 이다.

<표 1> 2017~2023년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선정한 ‘난민’ 관련한 디딤돌·걸림돌·주목 판결

시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판결문	디 딤 돌	걸 림 돌	디 딤 돌	걸 림 돌	디 딤 돌	걸 림 돌	디 딤 돌	걸 림 돌	디 딤 돌	걸 림 돌	디 딤 돌	걸 림 돌	디 딤 돌	걸 림 돌
난민 주제건수	3	1	2	1	1	2	2	-	4	-	2	1	1	3

이주인권사례모임이 선정한 판례들은 사법부¹⁹⁾의 대표적 난민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난민 문제는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맥락에 따라 특수한 개별성을 보여준다. 난민을 대표하는 판례는 없다는 말이다. 난민 모두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는 내러티브도 없고, 모두의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소급되지도 않는다. 다만, 이주인권사례모임이 선정한 판례들이 일반 판례에 비해 그 의미가 큰 이유는 난민의 포용과 배제,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여러 실천들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판례집은 법적 판결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관의 심리, 통역관의 위치성, 증거와 진술의 불/가능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맥락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주의 실천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선정한 난민인정 관련한 판결은 총 23건이다. 2017년에 디딤돌 판결 3건, 걸림돌 판결 1건을 시작으로 2018년에 디딤돌 판결 2건, 걸림돌 판결 1건, 2019년에는 디딤돌 1건, 걸림돌 판결 2건, 2020년에는 디딤돌 2건, 2021년에는 디딤돌 4건, 2022년에는 디딤돌 2건, 걸림돌 1건, 그리고 2023

19) 사법부라는 명칭은 사용 범례에 비해 포괄할 수 있는 맥락이 매우 넓다는 점에서 명료한 주체를 설정하고 글을 쓸 때에는 지양해야 할 단어다. 또한 사법부라는 단어로 포괄하기에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등 지역법원들에서부터 행정법원과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사법부 기관들이 있다는 점은 사법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에서 사법부라는 표현을 종종 채택하는 이유는 난민과 관련한 법적인 판결이 법조문과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하지 않은, 보다 넓은 의미의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원과 판사(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다.

년에는 디딤돌 1건, 걸림돌 3건을 선정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난민인정 관련한 상징적인 디딤돌/걸림돌 판결들은 아래와 같다.

〈표 2〉 2017~2023년 이주인권 판결문 중 ‘난민’ 관련 디딤돌·걸림돌 판결 목록 (연구자 정리)

구분	시기	주제	요약
디딤돌 판결	2017	난민인정자 귀화허가 기준	난민인정자의 귀화허가는 일반 외국인의 귀화허가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2017	난민법에 따른 사회보장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 등록을 해주지 않은 구청에 대하여 원고가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판결
	2017	난민면접과 통역인 문제	난민인정신청 심사과정에서의 난민면접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통역인을 통한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된 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판결
	2018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접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받은 난민신청자도 변호인 접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2018	반정부시위	반정부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은 중국 출신 난민 신청자의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한 판결
	2019	난민심사	난민신청자에게 출국명령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불허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난민을 심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0	체류자격 변경	원고는 일반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에 난민신청을 한 후에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정변경 없는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0	양성애자 난민	우간다의 양성애자 난민이 경찰로부터 구타 및 성폭행을 당해 2014년 난민인정신청하였고, 충분한 공포를 입증하지 못했다가 2017년에 정신병 증단을 진단받아 난민인정받음(2020년)
	2021	환승객	정치적 이유로 가족과 지인이 살해당한 난민이 2020년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 탑승해 경유 도중 난민 신청. 14개월 동안 터미널에 머물면서 난민신청회부 요청하다 2021년 난민인정신청권을 받음
	2021	반정부시위	이집트 반정부 시위 참여했다가 타인 명의로 제3국을 거쳐 2018년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무슬림형제단원에게 2021년에 난민지위 인정
2021	종교	이란 출신 아버지와 아들은 한국을 드나들다 기독교로 개종해	

구분	시기	주제	요약
			2016년 난민신청했다가 불인정 판결. 아들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이후 2018년 아들의 난민지위 인정 이후 2021년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돌봄을 위해 아버지의 난민신청 인정받음.
	2021	난민면접과 통역인 문제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의 난민면접 조서에 본인의 의사나 진술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졸속으로 진행된 허위난민면접조서 피해를 인정받고, 향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음.
	2022	민족과 종교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파키스탄 출신 남성이 본국에서 여성을 만나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민족과 카스트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난민인정 사유로 인정받아 난민신청 인정받음.
	2022	트랜스젠더	말레이시아 출신 무슬림 트랜스젠더가 여성처럼 옷차림을 한 채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됨. 2017년에 난민인정 신청하였으나 2019년에 불인정, 이의신청해 2022년에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2023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카메룬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본국의 무장단체 징집을 피하고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했다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음. 출국대기실에서 구금되었다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항소 끝에 난민신청 허가받음(2023)
걸림돌 판결	2017	동성애 난민	이집트 출신의 동성애자가 성행위 이력과 동성애 단체 등 동성애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을 두고, 성적지향이 불분명한 것으로 난민 불인정한 사례
	2018	남용적 난민신청 판단	네팔 국적 외국인이 제기한 난민 신청을 ‘남용적 난민신청’으로 보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한 사례
	2019	종교·여성차별적 관습에 의한 난민	라이베리아의 종교적·문화적 관습에 따라 여성차별적 관행에 따라 매매혼을 강요당하고, (기독교인) 남편이 독살 당했으며, 자신이 폭행당했으나 박해와 공포를 입증하지 못해 난민불인정 판결 받은 사례
	2019	체류기간 만료 이후 난민신청	이란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을 단기방문한 원고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 난민신청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2022	체류자격 변경	방글라데시 난민신청자가 한국에 E-9(비전문취업)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5일을 앞두고 난민신청신청함(2020년). 법원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한국에 오래 체류하고자 한 의도로 신청한 ‘남용적 난민’으로 봄(2022년)
	2023	난민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이 가정폭력과 강제결혼 문제로 난민신청신

구분	시기	주제	요약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청 하였으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 불회부 결정됨 (2022년). 제주공항 출국대기실에서 구금되어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4개월 뒤 최종적으로 불회부결정되어 제3국으로 송환(퇴거)됨
	2023	반정부시위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반정부 및 반쿠데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 및 자산 동결 당해 난민인정신청했으나(2018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난민불인정된 사례(2023)
	2023	체류자격 변경	몽골 출신 단기방문 체류자가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받았다가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사례

IV. 2017~2023년 디딤돌/걸림돌 난민인정심사 판결문 분석

난민인정심사 판결문은 난민에게 물음을 던진다. 그 물음은 난민신청자의 위태로운 위치를 고스란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난민으로 정당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난민은 자신이 받은 공포와 박해를 증언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은 그 진실성을 의심받는다. 이와 같은 의심은 법관만의 것이 아니다. 난민신청자가 과연 ‘진짜’ 난민인지 혹은 ‘가짜’ 난민인지 따지는 물음은 법관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면접관, 통역관, 그리고 한국 사회 일반에도 만연한 물음이다. 한편, 판결문에 드러난 난민에게 던져진 물음은 곧 난민으로부터 온 물음이기도 하다. 이는 곧 판결문에 드러난 행간과 행간 사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이 절에서는 난민인정심사 판결문에서 난민에게 던졌던 물음의 전제들과 판단의 인식들을 점검하며, ‘난민으로부터 온 물음’이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난민의 증언: 공포와 박해의 증언불가능성과 수행성의 문제

이집트 국적 남성 C씨는 2018년 자유정의당 만수라 지부 청년위원회 회장으로 민주 선거로 선출된 이전 정부를 쿠데타를 통해 전복시키면서 대통령으로 집권한 현재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 이내 그는 이집트 경찰에 체포되고 구금되면서 자산동결 처분을 맞이했다. 이에 C씨는 다시 체포될 위협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스스로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래 한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탈주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2021년)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였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C씨가 받은 것 같지 않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 법원은 1) C씨의 공포를 입증할 바가 없다는 것 2) C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3) C씨가 이미 이집트 법원에서 정치범으로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기에 이집트 사법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24: 89-93)

첫 번째 사례²⁰⁾는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된 사례다. 이집트 국적 남성 C씨는 2018년 자유정의당 만수라 지부 청년위원회 회장이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으로 집권한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 그 결과, C씨는 이집트 경찰에 체포되고 구금되면서 자산동결 처분을 당했다. 이에 C

20) <표 2> 2017-2023 이주인권 판결문 중 2023년 반정부시위 항목으로 걸림돌 판결로 분류된 사례를 가리킨다. 해당 판결은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반정부 및 반쿠데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 및 자산 동결 당해 난민인정 신청했으나 (2018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난민불인정된 사례다(2023).

씨는 다시 체포될 위험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스스로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래 한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탈주 계획이었다.

서울행정법원 2023.1.27. 선고 2021구단114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여권을 발급 받은 점, 원고의 가족들이 자국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배우자도 계속 공립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집트 정부의 적대적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자산동결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24: 269-275, 강조는 연구자)

그런데 법원의 판결(2021년, 2023년)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였다. 법원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C씨가 느낀 것 같지 않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 법원은 1) C씨의 공포를 입증할 바가 없다는 것, 2) C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3) C씨가 이미 이집트 법원에서 정치범으로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기에 이집트 사법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는 정치적 탄압을 받아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와야만 했던 C씨에게 인권이란 어떤 의미일지 묻게 되는 대목이다. 정치적 공동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는 본국으로부터 자산동결 처분을 받아 자신이 정치적 공동체를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여권을 발급받았고’, ‘배우자도 공립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국으로부터 적대적 주목을 받지 않는 자로 여겼다. 그의 사정만 보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나 차별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보면, 이 판결은 난민과 정치적 공동체 간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동체를 떠나 또 다른 공동체로 정착한다는 것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렌트가 ‘권리를 가질 권리’를 통해 인권 이전에 정치적 공동체를 요청했듯이 난민 역시 자신의 안전을 의탁할 공동체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난민이 정치적 공동체를 떠나 다시 도달해야 하는 장소는 또 다른 규범이 가득한 정치적 공동체다.

자신의 진술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난민은 극히 예외적이다.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이동하며, 심지어 신분증도

없이 본국을 떠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조사관과 면접조사를 할 때 나타난다.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박해와 관련된 사진이나 메모,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곤 하는데, 정작 면접조사 중에는 휴대전화를 면접조사실에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난민인권센터, 2023). 현재 난민면접은 이러한 난민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난민에게 입증 책임을 과하게 부과하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 나 ‘공포’ 를 직접 설명하라고 요청된다.

서울고등법원 2016.10.6. 선고 2016누386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외국인이 받을 ‘박해’ 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말한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적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19: 205-210, 강조는 연구자)

이집트에서의 3차례 동성교제의 시점과 상대방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나 설득력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당원들이 원고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의 형을 박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원고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별다른 조건을 두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은 채 풀어주었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없다. (….) ○○당이 누군가를 박해할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국가 정황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19: 47-51)

또 다른 판결문²¹⁾에서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²²⁾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

21) <표 2> 2017-2023 이주인권 판결문 중 2017년 동성애 난민 항목으로 걸림돌 판결로 분류된 사례를 가리킨다. 해당 판결은 이집트 출신의 동성애자가 성행위 이력과 동성애 단체 등 동성애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을 두고, 성적지향이 불분명한 것으로 난민불인정한 사례다.

22)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어떤 범주까지를 포괄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그 쟁점은 난민인정 판결에서 매우 주요한 위

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도 난민은 자신의 처지를 증명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법원은 출신국에서 난민의 동성애나 성적지향의 문제는 도덕규범에서 어긋나면서 사회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포함되지 않기에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표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난민협약 제1조의 난민 기준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에는 난민을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중략)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로 규정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난민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원고와 변호사가 성 정체성의 문제가 난민협약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난민인정심사를 요청했다는 데 있다. 본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원고의 난민신청은 처음부터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은 난민신청자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와 박해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난민의 조건이 이미 정해진 법적인 틀 안에서 완전하게 규정된 것이 아닌, 구성되는 영역 또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이 납득할만한 공포와 박해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전제 아래 난민의 성적 지향은 난민인정 기준의 또 다른 범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 2016년의 난민인정심사에서 난민신청자의 성적 지향이 박해받을 가능성으로 부상했던 배경은 수행적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난민신청자의 발화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테파니 데구아르(Stephanie Degooyer)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란 권리에 대해 주장함으로써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수행적인 독법을 소개한 바 있다. 즉, 아렌트가 권리를 가질 권리를 발화하여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Degooyer, 2018). 다만, 이러한 해석은 특정한 청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발화하는 개인에 앞선 공동체가 있어야 수행적 발화를 들을 수 있고, 비로소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발화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에 공동체라는 공간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데구아르는 “공동체에 소속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Degooyer, 2018: 46)는 것이 곧 수행적 발화가 빠져있는 순환논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와 그 발화의 문제를 확장시켜 증언과 증언불가능성의 문제로 이해할 때, 순환논리에 대한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다. 증언이란 구술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텍스트가 아니라 청자에 의해서도 닫히는 텍스트다. 그런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사건에서의 증언은 어떻게 고통받는 개개인의 몸에서 출발해 사회적인 신체를 얻게 되었는가? 증언 텍스트는 발화자의

치를 차지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공포와 박해에 관한 사법적 해석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난민이 경험한 공포와 박해는 어떻게 증언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떤 체계 아래서 증언이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난민의 법적인 해석이나 쟁점 논의는 황필규(2011: 60-92)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역사와 진실성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공동체나 국민국가가 늘 청자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증언이 사회적 신체를 얻게 된 배경에는 공동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거나 때로는 배제되었던 다양한 층위의 청자(활동가·기자·시민·연구자)의 몫이 있다.

난민 증언의 진실성은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의미화된 지평이 아닌, 객관적 문자와 구체적인 사건을 근거로 평가된다. 그러나 난민이 경험한 사건 그 자체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심사자를 설득하라는 요청은 기실 난민의 경험을 구체화가 아닌 추상화된(일반화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박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그 경험을 추상화시킨다는 말이다. 경험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대다수의 이해를 확보하기 어렵다. 난민의 경험이 심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이 투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난민의 경험이 추상화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난민은 자신이 겪었던 긴 세월의 스펙트럼 중에서 특정한 과거 어느 한 순간의 폭력성을 추상화해서 내보일 때에서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난민의 내러티브가 언제나 추상화된 형태로 존재해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의 언어는 언제나 구체적 형태로 현장의 기억을 전달하고자 했다. 주지하듯이,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는 필시 사건 그 자체에 관한 묘사를 동반하게 된다. 그런데 박해를 입증해보라는 말, 곧 증언의 추상화 작업은 세밀한 감정 표현과 묘사에 무뎠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난민심사자의 고통과 트라우마란 결코 추상화된 표현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민이 경험한 박해와 공포란 체계화된 문자 밖에 있는 비언어인 차원인 입술의 떨림, 초조한 눈빛, 가파른 숨소리, 찌푸린 표정 등의 정동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즉, 난민이 서술해야 하는 박해와 공포란 사실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의미화된 방식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세밀한 경험이지, 추상화된 형태로 일반화된 사건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전쟁의 공포, 종교로부터의 탄압, 관습에 의한 자유의 침해와 고통의 목소리는 결코 매끄러운 증언이 아닌, 바로 그 증언 불가능성에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2. 난민과 신문구조: ‘오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언어의 문제

한국의 난민신청절차 과정에는 법적인 쟁점 외에도 여러 실천들이 개입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판례와 법적 논리만이 아닌 그 안팎에 주어진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에 대한 논의는 난민신청절차에 관련되어있는 행위자들의 실천들을 떼어놓고 이야기될 수 없는데, 제각기 의도와 동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실천들은 켜켜이 쌓이며 난민에 대한 판결로 연결된다. 이는 출입국관리소에서부터 법원까지의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하나의 실천체계로 보아야 하는 이유도 하다. 이에 이 절에서는 난민인정 과정에 개입하는 조사관과 통역관, 법관이 빚어내는 실천체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난민면접과정에서 조사관과 통역관의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난민면

접과정에서 조사관은 난민 신청자의 박해와 공포를 인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지만, 그 의도는 종종 난민 신청자의 것과 빗나가곤 한다. ‘정확한 날짜’와 숫자에 초점을 맞춰 캐묻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집에 못 가요”(난민인권센터, 2023: 32)라는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난민신청자로 하여금 ‘예/아니오’로만 대답할 기회만 주거나, ‘서류는 당신이 위조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등 난민 신청자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도 보이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가 통역관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곤 한다. 무슬림에게 박해받은 내용을 서술해야 하는 난민이 무슬림 통역인을 통해서만 박해 사실을 전달해야만 하는 상황²³(난민인권센터, 2023: 34)은 통역관의 역할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된 난민 신청자가 “경찰서에서 통역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을 하라고 강요를 하였고, 저도 사실 내용도 모르고 결국에 마지막에 제 서명 사인만 하였습니다”(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23: 343-344)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한국의 통역관이라는 행위자가 난민인정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절차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받아야 하면서도 왜 부당함을 바로 잡는 말을 할 수 없었을까?

‘오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도미야마 이치로는 오키나와 전투 이후 “대지진 때 표준어를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자네들도 오인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富山一郎, 2020a: 449)는 일본사회의 전언을 통해 주권 없는 자들이 어떻게 더욱 더 비가시화되고 배제되는지를 소개한다. 앞선 도미야마의 인용은 간토 대지진 이후 오키나와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한 말인데, 도미야마는 이 인용의 요점은 말의 내용이 아닌 동작으로서의 말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오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거동 자체를 조심하라는 언설이며, 그렇기에 도미야마는 이 언설을 신체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도미야마는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신체에 신경을 집중하게 되고, ‘○○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富山一郎, 2020b). 사실 오인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는 타인에게 ‘나를 오인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묻고 답하는 과정이 이미 언어를 초과한 폭력으로써 작용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심사자인 내가 너를) 오인하지 않기 위해 (네가) 제대로 말해보라는 심문과 조사 과정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건에 앞서 미리 배제의 말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오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난민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다. 도미야마는 ‘오인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의 진

23) 유사한 사례로 이집트에서의 정치적 문제로 난민이 된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이집트인 통역관 앞에서 당국의 정치 이야기를 할 때, 혹여나 통역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실존적 두려움은 결코 통역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언은 ‘○○라면 어쩔 수 없다’ 는데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너를) 오해하지 않길 바라지만, 내가 ○○라면 어쩔 수 없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언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富山一郎, 2020a). 이 도식은 단순히 ‘가짜 난민 vs 진짜 난민’의 대당구조 속에서 내가 ‘가짜 난민’ 이라면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난민에게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생사여탈권을 움켜쥐고 있는 면접관이 난민 위장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난민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할 난민도 불인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음을 몸으로 감지하라는 데 있다.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이미 도식화된 우리/너희의 경계를 가시화하며, 사전에 배제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여기서 폭력은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자연화된다. 따라서 난민은 난민으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말문이 막히게 된다. 정당한 권리를 얻고자 국민성을 내던지며 비국민이 되기를 자처했는데,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은 자신의 권리 또한 내던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난민심사가 언어(한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인간’과 언어에 제약이 있는 ‘타자’ 간에 이뤄진다는 점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언어란 넓은 의미에서 이방인에게 말을 건넬 때 사용하는 것이자, 문화의 총체(ensemble)이며, 가치이자 규범이다(Derrida, 2023: 195).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소속의 잔여는 아니다(Derrida, 2023: 129). 모국어조차도 타자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모국어는 다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내가 전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가 그 언어에 속하거나 혹은 그 언어에 내가 속할 수 없다. 여기에는 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Derrida and Ferraris, 2022: 168-169). 이러한 맥락 아래 데리다가 제기하는 물음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방인은 어떤 언어로 자기 물음을 건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언어로 질문할 수 있을까?’ 를 묻기 때문이다.

범박하게나마 요약하자면, 데리다는 모국어를 타자의 언어로 읽어내면서 인간과 타자 사이의 간극을, 바꿔 말하자면 국민과 난민 사이에 놓인 차이의 문제를 좁히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나의 돈과 집, 내 조국과 우리나라라는 전칭적 수사들이 사실은 ‘소유물에 대한 환상’ (Derrida, 2023: 1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데리다는 모국어가 “사람들이 자기 위에 걸치고 있는 일종의 이차적인 피부, 이동식 자기-집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동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동 불가능한 자기-집이 아닐까?” (Derrida, 2023: 131)라고 묻고 있다.

난민면접과정에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배제의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이 폭력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적인 대처에 그치지 않고 조건적 환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너희의 경계의 모호함을 발견하고, 틈새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난민들을 향한 무조건적 환대가 현재 불가능하고, 혹여나 가능하더라도 지금의 체계에서 불필요하다면 조건적 환대를 여는 실천들이 덧대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난민인정과정에 개입하는 또 다른 행위자인 법관의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주관성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는다. 하지만 법관의 판결이 법 외부와 단절된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관은 판결이라는 행위를 통해 난민에 관한 지식을 생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법관은 사회적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난민을 구성’ 할 수 있는 주체로도 볼 수 있다. 판례에 근거해서 또 다른 판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기는 수사와 표현이 기계적이면 기계적일수록 난민에 관한 지식은 더욱 더 경로의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2018년 이래로 난민과 이주민 관련한 지배적인 사회적 담론²⁴⁾은 ‘가짜 난민’ 논란이었다. 요컨대, 예멘 난민의 입국 뒤에 따라붙은 가짜난민 담론은 난민제도의 목적을 ‘난민 인정’이 아닌, 가짜 난민을 색출해 국민을 보호하자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박경주는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란 “불안에 대한 투사(投射)이면서, 상상적 동일성을 지켜내려는 투사(鬪士)들에 의한 행위” (박경주, 2019: 52)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그는 지금 우리 시기의 난민은 하나의 인종(과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2019: 33). 이는 난민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인종으로서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인식²⁵⁾ 또한 인종차별적 담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난민 인정심사를 하는 어떤 법관은 “우리나라는 체포영장, 공소장, 법원의 출석요구명령서가 있는데, 원고는 본국에 연락해서 이런 문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김민아, 2021: 46)라고 묻거나,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나요?”²⁶⁾라며 왜 멀리 있는 한국까지 왔냐고 되묻기도 하고, 심지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입국되었나요?” 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물음은 체화된 난민에 대한 일반 인식을 대변하며, 그 인식이 선택적 배제를 전제로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달리 보면 이는 난민의 경계를 구획하고 난민이라는 대상을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성된 난민에 관한 지식, 즉 난민판결들은 뒤따를 난민신청자들에게 더 높은 법의 문으로 작동한다.

24) 난민 심사과정을 연구한 김가영(2020)은 출입국공무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부족한 진술과 불충분한 기억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전 국가에서 수기로 작성된 증거자료의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방식이 생길 수 있던 이유로 브로커의 존재와 (이미 지배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꼽는다. 브로커가 외국인의 무비자 밀입항을 돕고자 난민신청신청을 독려하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출입국공무원들의 난민 인정 과정은 내쫓긴 자들을 포용하고 보호를 위해서만 작동하지 않고, 불순분자 색출을 목표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들은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진술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출입국관리소가 졸속 심사를 거칠 때, 자연스럽게 관행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은 난민인정 절차가 기존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보수 우파의 담론인 ‘가짜 난민’ 담론이 더 쉽게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5) 난민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허가 혜택만을 받고자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많다’는 응답 비율이 63.4%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해영·표현덕, 2018). 물론 난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난민에 대한 편견이 스며들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난민신청률 대비 난민인정률이 1%밖에 안 되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난민들이 넘어야 할 능선 중 하나가 법관의 인식이라는 점은 난민이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취약 지점을 보여준다.

26)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총 193개국으로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2021년까지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 비율이 높았던 러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의 여권 지수는 각각 46위, 91위, 68위, 12위, 103위였다(난민인권센터, 2022). 이는 세계의 난민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3. 난민/국민의 안전과 포용적 인종주의의 문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도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법이 있다.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3월에 제정된 법으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행정법의 일종인 이 법은 큰 틀에서 ‘국가가 사인(私人)에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출입국관리법이 행정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이는 곧 이 법이 행정적인 권력으로서 국민과 타자의 경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포섭과 배제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문제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것도 바로 재량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속 행위’(羈束行爲)와 ‘재량 행위’(裁量行爲)의 범위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행정적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최소한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기속적 해석과, ‘국가는 때에 따라 폭넓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재량 해석은 법적 투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난민 문제는 기속과 재량 해석 사이에서 판가름 나는데, 달리 보면 난민 문제란 여러 실천들의 체계들 아래에서 판가름되는 문제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난민은 어떠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포섭과 배제의 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제1조(목적)에 드러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피면서 판결문들을 차례로 추적해보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의 목적만 보더라도, 이 법령의 범위는 단순히 한국을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의 체류관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합’이라는 넓은 범위까지 포괄한다. 사회통합은 누구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바로 국민과 외국인이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누구인가? 법령은 제1조(목적)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의 제2조(정의)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을 설명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하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킨다(출입국관리법 제 2조). 그리고 3호에 이르러 이 법령은 난민을 정의하고 있다.²⁷⁾ 여기서 논의할 만한 지점은 바로 사회통합의 기능과 범위다. 출입국관리가 목표로 하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체류관리 그리고 사회통합이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

27) 법령에서 난민은 <난민법> 제2조 1호 정의를 따르고 있다. 풀어 쓰자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있는가?

안전과 사회통합의 의미는 난민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판결문²⁸⁾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월에 방글라데시 국적의 B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에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0년 12월 26일이었다. B씨는 만료를 5일 앞두고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임시 체류자격인 기타(G-1)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법무부 지침상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만료일에 임박(4개월 이내)해서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은 허락할 수 없다며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B씨는 2021년 3월,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의 판결문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역할을 구체화된 형태로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5.11. 선고 2021구단4475 체류자격변경불허가 처분취소

출입국 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 체류기간 연장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점, (...) 만일 합리성이 없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난민신청을 계속 반복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 난민신청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본국에 귀국했던 2017년 난민신청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난민신청 제도를 알았음에도 체류만료일에 임박하여 신청한 이유에 대해 비전문취업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확인하고 원고를 남용적 난민신청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23: 273-279, 강조는 연구자)

방글라데시 이주민 B씨는 한국에서 4년 동안 이주 노동자로서 자신의 체류자격을 갱신해왔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와 법원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던 존재가 난민인정신청을 제기한 것을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했다고 봤다. 그들이 보기에 B씨는 더 이상 자신의 체류를 연장할 수 없게 되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이용했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했던 것이다.

28) <표 2> 2017-2023 이주인권 판결문 중 2022년 체류자격 변경 항목으로 걸림돌 판결로 분류된 사례를 가리킨다. 해당 판결은 방글라데시 난민신청자가 한국에 E-9(비전문취업)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5일을 앞두고 난민인정신청(2020년)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한국에 오래 체류하고자 한 의도로 신청한 ‘남용적 난민’으로 본 사례다(2022년).

심지어 본국에 귀국했을 때에도 자신의 ‘난민됨’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이나 증거물을 모으지 않았으며, 체류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 난민신청을 한 이유가 비자만료 시기를 따진 것이라는 주장은 사법부를 설득하기엔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한다는 문장은 누구의 안전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국민이다. 판결문에서 국민의 안전과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통제는 서로 반대 향으로 구축되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의 체류, 달리 말해 난민의 입국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적 안전은 국민과 다른 개인들이 국민들에 동화될 수 있는 한에서만 그 개인들에게 확장될 수 있다” (Balibar, 2011: 51). 이는 개인이 국민이 되어야 국민으로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말이며, 그렇기에 국민의 안전은 언제나 이방인에 우선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리바르는 ‘국민 우선’이라는 말이 본인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계 다른 곳의 사람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는 표어라고 말하는데, 이때 발리바르는 이 표어란 유사한 것들이 항상 유사한 것들과 함께 묶이도록 표상하고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Balibar, 2011). 달리 말해, 국민을 먼저 사고한다는 말은 곧 우리-공동체의 상을 국민으로 제한하며, 정치의 주체를 국가에 속한 자들로 국한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국민’으로 귀결되며, 그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여러 시민들(난민과 미등록 이주민, 외국인 등)은 배제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인을 위해서 난민인정비율을 조율한다거나, 국민의 편의를 우선해야한다는 수사(修辭)란 국가 영토 안의 여러 인구를 정화하는 정책과 다름없다. 즉, 국민 우선은 배제와 정화의 완곡어법에 불과하다(Balibar, 2011).

나아가 난민불인정 판결에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명목으로 난민을 배제하는 행태는 새로운 방식의 인종화와 인종주의를 보여주는 예시기도 하다. 인종주의란 “권력이 떠맡은 생명의 영역에 어떤 절단을 도입하는 수단” (Foucault, 2015: 305)이다. 그런데 과거의 인종주의가 제국주의 질서 아래 식민주의와 함께 ‘거친 인종주의’ (vulgar racism)로 작동했다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인종주의의 형태는 겉보기에 덜 폭력적인 ‘친절한 인종주의’ (polite racism)의 양상을 보인다(Fujitani, 2019). 이는 발리바르가 인종주의 패러다임이 배제적인 인종주의에서 포용적인 인종주의로 옮겨갔다고 지적한 바와도 공명하는 분석이다(Balibar, 2011). 난민은 본래 하나의 인종이 아니지만, 국민과 난민의 대당 구조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인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포용적인 인종주의란 국민이 되기에 마땅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자로서 구별되며 인종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난민을 향한 인종주의는 ‘국민 우선’이라는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보충한다(Balibar, 2022: 1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리보충이 국민을 우선한다는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인종주의가 덧대어지면서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거듭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난민됨의 요건들과 난민불인정 판결문이 담고 있는 표상과 실천은 지금 여기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대리보충으로서 인종주의, 그리고 인종화의 조건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통해 사법부가 이주와 한국 사회를 평가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사는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합리성이 없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을 보호한다면 난민신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결문에서는 판사의 관념 속에서 난민인정심사는 이미 거짓과 남용, 그리고 비합리성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용된 적이 있는 이주 노동자가 어떻게 난민이 될 수 있겠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던진다. 매끄러운 설명이다. 우리 사회 일반이 상정하고 있는 난민의 모습은 ‘보잘 것 없는 피해자’ 이지,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의 판결문은 한국에서 경제 생산활동에 참여한 자가²⁹⁾ 결코 난민일 수 없다는 일반 인식을 대변한다.

리사 로우(Lisa Lowe)의 ‘내부의 외국인’ 개념은 난민/노동자의 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회로를 제시한다. 로우는 아시아 출신 미국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내부의 외국인’으로 상상되어 왔는지를 논의하며,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시아인-미국인’ 이면서 ‘아시아인/미국인’으로 상상되었음을 가리켜 내부의 외국인으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로우의 설명에 따르면, 아시아인과 미국인 사이의 연결선(-)은 포용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만, 사선(/)에는 배제적인 관계가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로우는 사선이 두 가지 속성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Fujitani, 2019:65).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아시아인으로 타자화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의 외국인이란 곧 시민권을 지녔다는 의미에서는 국민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다른 인종이라는 의미에서 비국민으로서 사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공통된 접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유되지 않았다. 국민 바깥에 놓인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정치적 주체로 소환되기도 전에 비국민으로서 범주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노동자/난민’이 아닌, ‘노동자-난민’으로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난민이었지만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게 된 이들만큼, 이주노동자였지만 난민이 되는 것 역시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하는 난민, 유랑하는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정체성이 거듭해서 사유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29) 경제생산활동과 난민성의 관계는 손쉽게 정의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난민신청자가 왜 자신의 체류자격이 만료될 시기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는지를 되물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에서 체류자격이라는 것이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김민주, 2022). B씨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 구금될 수 있으며, 취업도 할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보험 적용에서 벗어나 과도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며, 은행 업무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게 되어 난민면접을 받으러 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B씨가 미리 알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난민인정신청을 했더라면 그의 생존권과 각종 권리들을 포기해야만 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V. 나가며: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

정치적 이유로 가족과 지인이 살해당하며, 본국으로부터 도피를 택한 B씨는 2020년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한국을 ‘경유’ 하며 난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외국인청장은 “환승객은 난민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 며, 난민신청을 접수해주지 않았다. B가 물리적 의미에서 입국했는지 몰라도, 규범적 의미에서 아직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B는 난민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와 난민신청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출입국관리소의 부작위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B는 공항 터미널에 머물러야 했으며, 14개월 동안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항 터미널에 갇혀 지냈다. B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탈장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다행히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통해 터미널 수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B씨는 법정 다툼 끝에 2021년 난민인정신청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22: 25. 연구자 일부 수정)

영화 〈터미널〉(2004)의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툼 행크스 役)는 본국인 크라코지아(가상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본국에서 발발한 내전으로 인해 여권이 정지된다. 본국으로 되돌아갈수도, 미국 시내로 나갈 수도 없게 된 빅터는 공항에서 노숙을 택한다. 다행히 그는 9개월 만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 〈터미널〉은 픽션이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논픽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2020년 B씨는 한국을 경유하며 난민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유하는 여행객은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기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난민신청을 거부당했다. 곧바로 그는 소를 제기했지만, 한국 시내로 나갈 수는 없었고 공항 터미널 구석에 갇혀 1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이 사건이 전해주는 난민에 관한 단상은 무엇일까?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아직 그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출입국관리소의 행위가 인도주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아직 난민도, 국민도 아닌 환승객이라는 신분이기에 난민문제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은 난민과 국민 사이를 외부나 단절로 이해하며, 난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경식, 2006: 204). 난민 문제는 국민과 별개의 문제가 아닌, 국민/난민의 문제다. 때때로 그것은 국민국가 차원의 차별과 폭력을 은폐하고자 지목된 외부로 등장했고, 또 다른 한편 국민국가 내부 구성원을 하나의 국민으로 규합하기 위한 수사로 등장했다. 따라서 난민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껏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환대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인도주의적 관점 아래서 난민법을 개선하고, 난민인정 심사 과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환대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 것은 아니었다. 난민 문제를 법적인 문제나 윤리의 문제로 이해하게 만들면서, 정작 ‘난민’은 누구이며, 또 우리 ‘국민’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은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재점검하며 난민이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이 여러 행위자들의 실천과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난민 문제는 사법적 판단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국민/비국민 혹은 시민/타자의 이분법적 구도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유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은 ‘물음으로-뉘-존재’가 한국 사회에 건네는 물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준다.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인 난민 신청자는 질문 앞에 놓인다. 그는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난민 신청자에게 건넨 질문은 반대로 우리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난민 신청자의 대답은 그가 한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달리 말해, 우리-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덧붙여,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은 난민인정과정에서 여러 실천들의 개입과 난장들 속에서 체계화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요컨대, 난민인정과 난민불인정은 법적 요건의 충족과 불충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난민에 관한 이해와 상식, 그리고 지식 체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빚어낸 문제다. 그런 점에서 난민 문제는 규범과 윤리적인 호소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논제가 아닌 것이다.

또 다른 한편,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은 보편적인 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민이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 자격은 출생을 통해 생득적으로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신문의 절차를 거쳐서 부여될 수 있다.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신문받지 않는다. 국민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지위기에, 신문받지 않고 국민이 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달리, 이주와 귀화를 통해 국민성을 얻는 것은 ‘예외’로 받아들여진다. 정상과 예외의 도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과연 그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지 질문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는 교육이나 문화적 영향 등을 통해 한국인이 ‘되어간다’(becoming). 처음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난 자는 없다.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국민국가에 앞서 처음부터 한국인이었던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라는 속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속성이 아니라 부여된 속성에 불과하다. 바로 이 지점은 보편적인 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이해를 잠시 멈추고,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문의 절차 속에서 우리는 누가 난민인지를 구별한다. 난민심사는 국민/난민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다시 말해 보편/특수의 대당적 구조 아래서 진행된다. 신문하는

자는 정상/국민이자 보편자의 속성을 담지한 ‘인간’이다. 반면에, 답하는 자의 위치는 비정상/비국민이자 특수(예외)한 속성을 담지한 ‘타자’다. 난민은 신문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국인이 될 수 있으며, 그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 증명해야 한다.³⁰⁾ 즉,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란 신문의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은 정치-시민사회에 대한 다른 상을 제공한다. 이 패러다임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여집합으로서 등장한 국민 상을 가리키고 있다.

30) 한국에서 난민이 되지 못한 외국인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난민불인정/난민인정심사 불회부를 받아들이거나, 항소하거나.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난민불인정/난민인정심사 불회부 판결의 불합리함에 항소했던 이주민들의 이야기였다. 출입국관리소와 법정의 판단을 받아들이거나/의도적으로 회피한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이 떨어진다. 재판 중인 외국인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보장받는다. 다시 말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는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출입국관리소의 요구에 따라 주어진 시간 안에 한국(혹은 출입국항)을 떠나야 한다.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실낱같은 희망을 떠안고 외국인보호소로 들어가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을 거부하고 미등록 이주민이 되어 체류하다 불합치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외국인보호소는 인권 침해나 불합리한 처우가 작동하는 예외적인 공간이며, 사실상 오갈 곳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용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공간이다. 다른 한편, 외국인보호소는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리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김가영. 2020. 『한국 난민 심사 및 인정 절차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 2021. “2017-2018 및 2018-2019 판결집과 비교분석: 제도 및 입법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 김민주. 2022. “걸림돌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22.5.11. 선고 2021구단4475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 김성수. 2011.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 정인섭, 황필규 편.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135-266쪽.
- 김용철. 2020. “국제난민레짐의 정치경제 동인과 변천사적 연구: 한국 난민레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8.
- 김중세. 2019.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법이론실무연구』 7(2). 37-59쪽.
- 김종철. 2014. “난민정의에 대한 한국 판례의 비판적 고찰: 합리적인 근거 있는 우려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1(2). 53-84쪽.
- 난민인권센터. 2022. 『202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로 살아가기』.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시스. 2023. “[보도자료] 인권위 “공무원 1인당 난민 177건 심사…인력 늘려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120_0002527318) (검색일: 2024.11.16)
- 박경주. 2019. 『난민인권에 대한 노트』. 이태원작업실.
- 박순용·서정기·박진숙. 2020. “난민을 위한 정책 제언.”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의미 탐색과 정책 과제』. 집문당.
- 박인현. 2016.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법과인권교육연구』 9(2). 89-114쪽.
- 서경식. 2006.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 서영표. 2020. “현대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 『탐라문화』 65. 138-174쪽.
- 손영화. 2019. “난민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 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0(2).
- 신지원. 2015.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5(3).
- 이보경. 2023. “웁진이 후기.” 『환대에 대하여』. 필로소픽. 227-236.
- 이은채. 2019.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3). 289-316쪽.
- 이 일. 2019. “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사법』 1(47). 31-76쪽.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19. 『2017-2018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이주인권사

- 레연구모임.
_____. 2020. 『2018-2019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이주인권사
레연구모임.
_____. 2021.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이주인권사
레연구모임.
_____. 2022. 『2020-2021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이주인권사
레연구모임.
_____. 2023.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이주인권사
레연구모임.
_____. 2024.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이주인권사
레연구모임.
- 이진우. 2022. “한국의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민 불복 소송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9.
- 임상혁. 2024. “[보도자료] 21개월 기다려 2%만 인정받는 ‘난민’ … 심사 모니터링,
생계보장 필요.”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31010018803>) (검색일: 2024.11.16)
- 정금심. 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난민 심사 및 난민 처
우를 중심으로.” 『법조』 67(3). 645-698쪽.
- 정인섭. 2011.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정인섭·황필규 편.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 진태원. 2023. “해제: 환대라는 이름의 철학적인 것.” 『환대에 대하여』. 필로소픽.
237-246.
- 차규근. 2011. “한국의 난민정책.” 정인섭·황필규 편.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
인문화사.
- 최병두. 2023. “난민의 소외와 장소를 가질 권리로서 환대.” 『인간과 평화』 4(1).
111-155쪽.
- 황필규. 2011.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 정인섭·황필규 편. 『난민의 개념
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 富山一郎. 심정명 역. 2020a. “평화를 만드는 말의 모습.” 김기남·김현미·도미야마 이
치로·미류·송다금·신지영·심아정·이다은·이용석·이지은·전솔비·쭈야·추영룡·심
정명 편. 『난민, 난민화되는 삶』. 도서출판 갈무리. 445-466쪽.
_____. 심정명 역. 2020b. 『시작의 삶』. 문학과 지성사.
- Arendt, H. 이진우·박미애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그레이트북스.
- Balibar, E. 김상운 역. 2022. 『인종, 국민, 계급: 모호한 정체성들』. 두번째테제.
_____. 진태원 역. 2011.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 Degooyer, S., Hunt, A., Maxwell, L., Moyn, S., and Taylor, A. 김승진 역. 2018. 『권리를 가질 권리』. 위즈덤 하우스.
- Derrida, J. 이보경 역. 2023. 『환대에 대하여』. 필로소픽.
- _____. 남수인 역. 2004.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현대신서.
- Derrida, J. and Ferraris, M. 김민호 역. 2022. 『비밀의 취향』. 이학사.
- Foucault, M. 김상운 역.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 ~ 76년』. 난장.
- _____.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 역.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 _____. 이상길 역. 1995. “천하나의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며”. 『세계의문학』 76. 76-144쪽.
- _____. 1991. “Questions of Method.” Burchell, G., Gordon, C., and Miller, P.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 Fujitani, T. 이경훈 역. 2019.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제2차 세계대전기 식민지 조선인과 일본계 미국인』. 푸른역사.